##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편제4장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3편 제12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옹벽 전면을 블록으로 시공하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보강토(Reinforced Earth)라 함은 인장력이 큰합성섬유 등으로 제조된 보강재를 성토(뒷채움재)다짐층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내부응력및 외력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주도록 보강된흙을 말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Concrete Block)이라 함은 보강토의 전면에 설치되어 보강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강토 옹벽의 외부 마감재로 사용되며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다) 보강재라 함은 블록에 연결되고 성토(뒷채움재)층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흙과의 마찰력으로 토압에 저항하도록 하는 합성섬유 등으로 제조된 띠형(보통 THK 2.5~4.3mm, W50mm)이나, 격자형의 재료를 말한다.

